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취약장애 신설(시행령 개정, '26.7.1.), 간장애의 심한 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기준 문구가 변경됨(시행규칙 개정, '26.7.1.)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규칙 별표의 중증장애인 기준 현행화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 나. 취약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1<개정 2026. 00. 0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00. 00.>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다리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1) 팔 관절장애

가) 두 팔 각각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2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라)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바)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2) 다리 관절장애

가) 두 다리 각각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기능장애

1) 팔 기능장애

가) 두 팔을 마비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 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마비와 관절오그라들음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Modified Bathel Index)가 69점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5.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6. 자폐성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7. 정신장애인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능력장애 측정 기준(이하 "능력장애 측정 기준"이라 한다)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11. 간장애인

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나.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흉수, 2)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12. 안면장애인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3. 장루(창자썩길)장애인 및 요루(요도썩길)장애인

가. 장루(창자썩길)와 함께 요루(요도썩길) 또는 방광루(방광썩길)를 가지고 있으며, 장피누공(창자피부썩길), 배뇨기능장애 또는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루(창자썩길) 또는 요루(요도썩길)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썩길)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다.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공장썩길)를 가지고 있는 사람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5. 비고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00. 00.>

(3쪽 중 1쪽)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수정신고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고용부담금: 즉시 고용장려금: 30일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 산 품)		⑥ 업종코드
⑦ 소재지	⑧ 사업장 수		개
⑨ 사업체 전화번호	⑩ 사업체 팩스번호	⑪ 사업장 구분: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⑫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년 장애인 고용현황											
월별	⑬ 전체 근로자 수	⑭ 적용제외 근로자 수	⑮ 상시 근로자 수	⑯ 의무 고용인원	⑰ 고용 장려금 기준인원	⑱ 전체 장애인	⑲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⑲ 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⑳ 미달 고용인원	㉑ 고용 장려금 제외인원	㉒ 고용 장려금 지급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직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㉓ 장애인 고용률				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㉕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㉖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 원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㉗ 고용예정 직무		㉘ 전체 고용인원		㉙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시기		고용 방법
					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㉚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실명번호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㉛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상자 수	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분할납부 신청											
㉜ 고용부담금				㉝ 고용장려금 산출액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㉞ 연계고용 감면액				㉟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㊱ 실 납부금액 (= ㉜ - ㉝ - ㉞ - ㉟)				㊲ 중소기업 (해당하는 경우 ㉟)							

첨부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명세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고서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99명 이하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 고용장려금 지급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보고·신고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보고서·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
 - 1) 사업장(모기업) 보고서·신고서,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보고서·신고서, 3) 총괄 보고서·신고서(「1」과 「2」의 합산)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2) 및 3)의 보고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산입하여 작성합니다.
 - 나. 고용장려금 지급은 모기업 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1)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작성방법>

<사업주 기본 정보(공통 작성사항)>

1. ③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④란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⑥란에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업종명 및 주된 생산품명과 세세분류 5자리의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4. ⑦란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총괄”란에 √ 표시합니다.

<장애인 고용현황(공통 작성사항)>

5. ⑧란에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6. ⑨란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7. ⑩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㉔ 전체 근로자 수 - ㉕ 적용제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⑪란의 “의무고용인원”은 “㉖ 상시근로자 수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하며, 1명 미만의 할수는 버림)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소속된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합니다.
9. ⑫란의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은 “㉖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할수는 올림)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합니다.
10. ⑬·⑭란에는 월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합니다)인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장애정도에 따라 적습니다.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가 총괄 보고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각종 법정 장애인인 1/2로 산정(1명 미만의 할수는 올림)합니다.
11. ⑮란의 “미달 고용인원”은 ⑬의 의무고용인원 - ⑭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⑯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을 월별로 산정하여 적되, 장애인인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월(月)은 “미고용월”란에, 장애인인 고용한 달에는 “고용월”란에 적습니다.
12. ⑯란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은 “고용보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지급받은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많은 경우의 장애인만 해당함) 수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배 해당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 인원을 합산하여 월별로 적습니다.
13. ⑰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⑮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⑯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⑰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4. ⑱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⑮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⑯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㉖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15. ㉒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㉔ 미달 고용인원”을 적습니다.
16. ㉓란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에는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2)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부족, 3) 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 4) 장애인용 시설 또는 장비의 부족, 5)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적되(우선순위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함), 그 밖의 사유의 고용개선 사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17. ㉔란의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위하여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임·배치한 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18. ㉕란의 “고용예정 직무”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라 함)에 따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동종사자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개의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19. ㉖란의 “전체 고용계획 인원”에는 장애인에 포함한 전체 고용계획 인원을 적습니다.
20. ㉗란의 “장애인 고용계획”의 “인원”란에는 금년도에 고용예정인 장애인 수를 적고, “시기”란에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으며, “고용방법”란에 1)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가점 부여, 2)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3) 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4) 우문식·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5) 기타(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중 하나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21. ㉘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에는 ㉘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서 ㉘란의 “고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2. ㉙란의 “계좌실명번호”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은행계좌의 실명번호로 법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3. ㉚란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명칭, 대상자 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24. ㉛란의 “고용부담금”에는 ㉛란의 “미달 고용인원”을 미고용월(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과 고용월(장애인을 고용한 달)로 구분하여 계산된 월별 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월 고용부담금액 산정]

- 미고용월: 미달인원 × 월 최저임금액
- 고용월: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말하며, 장애인 고용월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함)

25. ㉜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는 ㉜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주)가 사업장(모기업) 보고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고용장려금을 제외한 사업주(모기업)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액만을 적습니다.
26. ㉜란의 “연계고용 감면액”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함)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계고용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27. ㉜란의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에는 납부할 고용부담금을 전액 일시납부할 경우 고용부담금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거나 고용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8. ㉜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거나 ㉜ 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 또는 6기료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균등 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각 분기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잔채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29.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한 중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란(㉜란부터 ㉜란까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란(㉜란부터 ㉜란까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분할납부 신청란 중 ㉜란부터 ㉜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30. ㉜란의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공제 대상이 아님),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한 가산금은 추후 고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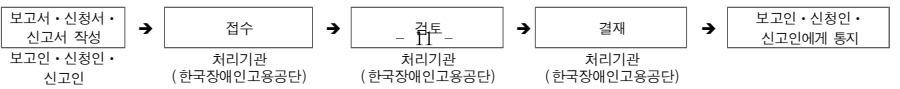
[첨부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장애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인정 구분	장애 유형	상이 등급	중증(경증) 여부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 직무	임금(월)	「고용보합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 위의 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나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1. 장애인정 구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장애, 16) **해당장애** 1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4. 중증(경증) 여부: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5.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2)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
6. 장애인정일, 입사일 및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작성합니다(예시: 20230101).
7. 근무 직무(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동 종사자
8.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작성합니다.
9. 「고용보합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락처	(044) 202 - 7498